



문화체육관광부



수신 종교단체 대표
(경유)

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방역 협조 요청

1. 관련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8.20.)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,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,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: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: 3단계)를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가. 적용기간: 2021. 8. 23.(월) 0시 ~ 2021. 9. 5.(일) 24시

나. 적용지역: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*

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적용단계

○ 수도권: 거리두기 4단계

○ 수도권 외 지역: 거리두기 3단계

※ 본 조치(단계)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·군·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

※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

※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·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

1)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(1, 2, 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

○ 대상시설(35종)

- 1그룹(3종):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펍·홀덤펍게임장
- 2그룹(5종): 식당·카페, 노래(코인)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- 3그룹(11종):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, 유원시설, 오락실·멀티방,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,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, PC방
- 기타시설(14종): 스포츠클럽(관람)장, 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,

미술관·박물관·과학관, 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, 숙박시설, 파티룸, 도서관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이미용업, **종교시설**

■ **고위험 사업장(2종)**: 콜센터, 물류센터

○ **법적근거**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**조치내용**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1: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붙임2: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2) 모임·행사

○ **법적근거**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**조치내용**: 방역지침 의무화

● (3단계)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,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·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

↳ 모임·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(4단계 금지)

● (4단계) 사적 모임 5명(18시~익일 05시 3명)이상 금지, 그 외 모임·행사 금지

↳ 예방접종완료자가 18시~21시 중 식당카페 이용 시 최대 4인(접종 미완료자 최대 2인)까지 이용(사적모임) 가능

<50명 이상(3단계) 금지(4단계)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>

법인·단체·공공기관·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행사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, 기념식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

※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은 각각 별첨 ‘기본방역수칙’의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장 수칙 적용

● (시험1~4단계) 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
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붙임3: 수도권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붙임4: 수도권 외 지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3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 귀 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소속 종교시설 등에 안내하여 이용자 등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

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5.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

행정사무관

손문희

종무1담당관

전결 2021. 8. 20.

강성태

협조자

시행 종무1담당관-2945

(2021. 8. 20.)

접수

우 61485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

/ <http://mcst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2317

팩스번호 044-203-3462- / smh0828@korea.kr

/ 대국민 공개

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